

추가 약정서

[청년 월세(대환) 자금 대출용]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귀하

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(1)(가계용) 등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(자격요건)

동 대출의 자격요건은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¹⁾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에 한합니다.

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, 월세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고객
-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
- 채무자와 배우자(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배우자 예정자(이하 ‘결혼예정자’라 합니다) 포함)가 무주택인²⁾ 고객
- 채무자와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
- 채무자와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『주거급여법』 제5조의 제1항에서 정한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고객

제2조(월세대출금 관련 사항)

① 월세대출금 관련 정보

| 목적물 주소 | | | 이체지정일 | 일 |
|---------------|---|----|--------|------|
| 월세금액 | 금 | 원정 | 매월대출금액 | 금 원정 |
| 임대인 입금계좌번호 | | | 은행명 | |
| | | | 예금주명 | |

- 1회차 월세대출 실행일은 본 대출의 최초 신규일자이며, 2회차 이후의 월세 대출실행일은 제1항의 이체지정일입니다.
- 월세대출 실행일이 휴일(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, 근로자의 날, 토요일무일 등 은행의 비영업일)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실행됩니다.
- 은행에서 이미 받은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할 경우에는 대환대상 금액을 일시에 실행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(월세대출 주요조건 변경시 고지 의무)

① 월세대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해당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월세대출금 관련 정보(입금계좌번호 등) : 월세금 지급(변경) 신청서
 - 임대차계약 변경(이사, 임대차기간, 월세변경 등) 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 등
 - 혼인관계 변동 : 혼인관계증명서 등
- ② 위 제3조 제1항의 변경내용을 은행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및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의 및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4조(월세대출금 지급 중단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며,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대출금 지급을 재개합니다. 단,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미지급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
- 채무자의 신용도판단정보³⁾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등록된 경우
- 하나은행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경우
- 월세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

1) 예비세대주 :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예정인 자
2) 무주택자 :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. “주택”이라 함은 『주택법』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, 분양권 및 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3) 신용도판단정보 :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6조에 의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한 『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』 제7조의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등록하는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관련인정보, 미수발생정보,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 정보



